

지정스포츠클럽 [] 지정 갱신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5일
신청인 (대표자)	①성명		
	②법인·단체명		
	③전화번호		
	④소재지		
	⑤설립 연월일		
	⑥사용 시설		
	⑦기숙사 운영 여부: 운영함 [] 운영하지 않음[] - 기숙사 사용인원 : 명		
	⑧운영 종목		
	⑨회원 현황: 총 회원 명		
	여성 회원 명		
신청 법인·단체	청소년 회원 명		
	장애인 회원 명		
	중증(명). 경증(명)		
	지체(명). 뇌병변(명). 시각(명)		
	청각(명). 지적·자폐(명). 기타(명)		
일반 현황	⑩조직·인원(행정인력 및 체육지도자 수)		
	⑪주요 추진사업		

「스포츠클럽법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의 [] 지정 []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한체육회

대한장애인체육회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스포츠클럽법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.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(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유의 사항

-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“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인 사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)을 의미합니다.

처리절차

